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3. . ~ 3.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화학식 $Al(OH)_3$ 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 $55\mu 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공급국	공급자	제품 모델	백색도 (YS/T 469-2004)
중국	찰코산동신소재(CHALCO Shandong Advanced Material Co., Ltd.) 또는 찰코중주신소재(CHALCO Zhongzhou Advanced Material Co., Ltd.)	HC110A	90이상
		HC110KK	
		H-WF-60-SP	
		H-WF-75	
		H-WF-75-SP	
		H-WF-90	
		H-WF-90-SP	
		H-WF-100	
		H-WF-50C-SP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찰코산둥(Chalco Shando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찰코중주(CHALCO Zhongzhou Aluminum Co., Ltd.) 나. 찰코물자(CHALCO Materials Co., Ltd.) 다. 찰코청도경금속(CHALCO Qingdao Light Metals Co., Ltd.) 라. 찰코청도무역(CHALCO Qingdao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마. 찰코산둥신소재(CHALCO Shandong Advanced Material Co., Ltd.) 바. 찰코중주신소재(CHALCO Zhongzhou Advanced Material Co., Ltd.)	13.99
	2. 롱커우동하이(Longkou Donghai Alumina Co., Ltd.)와 그 관계사인 얀타이진타이(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39
	3. 그 밖의 공급자	13.99
호주	4. 알코아(Alcoa Of Australia Limite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7.96
	5. 그 밖의 공급자	37.96

주 1) ‘그 밖의 공급자’란 관세법 제 52 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 대상 기간 이후에 우리나라에 부과대상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말한다.

주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 2 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 3 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2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